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가. 제안이유

- 여성·청소년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력 개발, 영·유아의 보호 육성 등 시민에게 복지증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문화센터의 업무(안 제3조)

1.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취미, 기술, 교양강좌 등 능력배양
2. 청소년의 창의력개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취미, 기술, 교양강좌 등 정서함양
3.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등 문화, 체육시설 운영
4.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
5. 기타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

○ 사용허가(안 제4조)

1.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도 또한 같음
2. 신청자의 경합시 우선순위에 의거 허가

○ 운영(안 제5조) :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가능

○ 사용료(안 제8조)

1. 사용료, 수강료 및 보육료를 구분하여 별표로 정함
2.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
3.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책상 필요시에는 감액 가능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몇 개소입니까?	○ 11개소입니다.
○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삼정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운영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까?	○ 다목적설치조례안은 따로 있으며 고강복지관이 여기에 해당되며, 여성회관, 청소년회관과 다목적복지회관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 중동복지관과 심곡본1동 복지관은 별도 조례가 없는지요?	○ 별도로 없고 적용하려면 다목적복지회관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조례안이 2개 안이 올라 왔는데 나중에 올라온 안이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조직 및 운영, 위원회설치가 추가되어 있는데 어느 안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요?	○ 먼저 올린 안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린 안이고 두번째 안은 그 후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좋은 안이 제기된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나 나중 안이 조금 진보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용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기능, 취미교실 수강료는 기타 복지관보다 낮게 책정되어, 복지관간의 갈등요소가 생길 우려가 있는 바, 이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복지관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지시설과 비용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위탁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복지관의 취미교실을 조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모두 20,000원을 상회했으며 부천시와 비교할 수 없어서 기초 3시간은 1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인근에 있는 시 자체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용료와 민간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용료와 비교평가 했으며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민복지차원과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민간분야보다 싸야 된다는 원칙론이 지배적이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38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1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동조례안에는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센터의 관장 업무가 여성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음.

□ 주요골자

- 시설의 종류를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보육정보센터로 구분하여 신설(안 제2조제2항)
- 업무를 문화센터별로 구분하여 세분화(안 제3조)
- 운영위원회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과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
-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안 제5조)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 등 시민에게 평생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의 종류) ①문화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번지에 둔다.

②문화센터에는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을 둔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여성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교육 및 여가교육
2.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3.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활동

②청소년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문화활동
2.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
3. 청소년의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능력배양

③문화기획·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활동 기획 및 조정
2. 각종 문화EVENT 발굴 시행
3. 문화·예술관련 인력 양성
4. 시민회관 및 기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운영에 관한 역할 수행

④기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
2.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
3.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①여성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제5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6조부터 14조로 한다.

안 별표 5항 기능, 취미교실 수강료의 비교란의 2번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직업 교육 및 취미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 청소년 등 시민에게 복지증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북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 청소년 등 시민에게 평생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북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문화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번지에 둔다. (신설)</p>	<p>제2조(위치 및 시설의 종류) ①(제정안과 같음) ②문화센터에는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을 둔다.</p>
<p>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p>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취미, 기술, 교양강좌 등 능력배양 2.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취미, 기술, 교양강좌 등 정서함양 3.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 4.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 5.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여성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교육 및 여가교육 2.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3.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활동 ②청소년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문화활동 2.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 3. 청소년의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맞는 능력배양 ③문화기획·문화활동 경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활동 기획 및 조정 2. 각종 문화EVENT 발굴시행 3. 문화·예술관련 인력 양성 4. 시민회관 및 기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역할 수행

(신설)

(신설)

- 제4조(사용허가 등) ①~③(생략)
- 제5조(시설운영의 위탁) (생략)
- 제6조(교육 및 강사위촉) ①~②(생략)
- 제7조(사용제한) ①~③(생략)
- 제8조(사용료 등) ①~③(생략)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생략)
- 제10조(관람료) ①~③(생략)
- 제11조(소해배상 등) ①~③(생략)
- 제12조(시행규칙) (생략)
- (별표)-안 8조 관련
- 5. 기능, 취미교실 수강료

④기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
- 2.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
- 3.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공익상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①여성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제4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③(제정안과 같음)

제7조(시설운영의 위탁) (제정안과 같음)

제8조(교육 및 강사위촉)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9조(사용제한) ①~②(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③(제정안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정안과 같음)

제12조(관람료) ①~③(제정안과 같음)

제13조(손해배상 등) ①~③(제정안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별표)-안 11조 관련

5. 기능, 취미교실 수강료

비 고	비 고
1. (생략) 2. 기술교육 중 컴퓨터, 미싱, 요리교실 등 부 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을 제외한 기 타 기술교육은 취미교육에 해당하는 수강 료를 징수함	1. (제정안과 같음) 2. 전문직업 교육 및 취미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를 조정 할 수 있다.

[수정안 포함]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 등 시민에게 평생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
 대하고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의 종류) ①문화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번지에 둔다.

②문화센터에는 여성문화센터·청소년문화센터 및 보육정보센터와 부대시설을 둔다.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교육 및 여가교육
 - 나.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 다.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육성
 - 라.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활동
2. 청소년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문화활동
 - 나.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
 - 다. 청소년의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맞는 능력배양
3. 문화기획·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문화·예술활동의 기획 및 조정
 - 나. 각종 문화이벤트 발굴 시행
 - 다. 문화·예술관련 인력양성
 - 라. 시민회관 및 기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운영에 관한 역할 수행

4. 기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운영

나.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

다.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①여성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과 유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센터의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강사위촉) ①시장은 청소년 및 여성의 정서함양과 능력배양을 위한 기능, 취미, 교양강좌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문화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강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한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중대히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문화센터의 수용료, 수강료 및 보육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문화센터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제12조(관람료) ①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시행하고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발행매수의 20%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내에 문화센터의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당해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공연장)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평 일			휴 일			비 고
		오 전	오 후	야 간	오 전	오 후	야 간	
대 공 연 장	2시간	75,000	100,000	125,000	100,000	125,000	150,000	1. 오전, 오후, 야간 시간대별 사용료 기 준은 사용빈도가 많 은 시간대(3시간)를 기준으로 하여 1시 간 마다 10% 이내 로 가감산출 2. 시간대가 중복될 때 에는 시간 범위가 많이 포함된 시간 대를 적용 3. 청소년(초, 중, 고) 및 공연연습을 위 한 무대 사용시는 해당요금의 50%를 적용 4. 휴일은 토요일, 일 요일, 공휴일로 합
	3시간	82,000	110,000	137,000	110,000	137,000	168,000	
	4시간	91,000	121,000	151,000	121,000	151,000	185,000	
	5시간		133,000	166,000		166,000	203,000	
	6시간			183,000			224,000	
	1일		234,000			306,000		
중 강 당	2시간	40,000	49,000	58,000	49,000	58,000	66,000	3. 청소년(초, 중, 고) 및 공연연습을 위 한 무대 사용시는 해당요금의 50%를 적용 4. 휴일은 토요일, 일 요일, 공휴일로 합
	3시간	45,000	54,000	64,000	54,000	64,000	73,000	
	4시간	50,000	60,000	70,000	60,000	70,000	80,000	
	5시간		66,000	77,000		77,000	88,000	
	6시간			85,000			97,000	
	1일		120,000			140,000		

(체육관)

(단위 : 원)

사용구분	사용시간	사용기준	요 액		비 고
			평 일	토, 일, 공휴일	
실내체육시설	전용	가. 체육경기 • 주간(08:00~17:00) • 야간(17:00~23:00)	20,000 30,000	30,000 45,000	
		나. 체육행사 • 주간(08:00~17:00) • 야간(17:00~23:00)	40,000 60,000	90,000 90,000	
	이용료 (운동연습)	가. 개인 : 2시간당 나. 단체(동일팀 10인 이상) : 2시간당	1,000 800	1,000 800	

(기타시설)

(단위 : 원)

사용구분	사용시간	사용기준	요액	비고
세미나실	2시간		20,000	
독서토론실	2시간		20,000	
분장실	4시간	2개소(남, 녀 기준)	10,000	
음악감상실	1인/2시간	청소년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 고등학생 이하 • 일 반 : 대학생 이상
		일 반	1,000	
독서실	1개월	청소년	4,200	
		일 반	7,000	
	1일	청소년	300	
		일 반	500	
노래방	1실/1시간		5,000	
디스크장	1시간/1인		2,000	단체(10명 이상) : 1,000원
전시실	1일(09:00~21:00)	3.3m²(1평)	200	조명료는 별도 1일 10,000원 징수
합숙관	1인/1박	청소년	3,000	단체에 한함
		일 반	6,000	단체에 한함

2. 부대시설 사용요금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악기	가. 그랜드피아노(대)	1회	20,000	1. 연습공연시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히 기준액의 50% 적용 2. 마이크(유선)1개 추가시 2,000원 추가 징수
	나. 그랜드피아노(소)	1회	15,000	
	다. 업라이트피아노	1회	10,000	
음향	가. 마이크(유선)	1회(2개)	5,000	3. 무선마이크 1개 추가시 3,000원 추가 징수 4. 녹음료는 사용자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용 기준 1개 추가시 동일 금액 추가 징수
	나. 무선마이크	1회(2개)	6,000	
	다. 녹음료	1회(1개)	3,000	
	라. 녹음기	1회(1대)	3,000	
	마. 무선인터컴	1회(3대)	6,000	
	버. 컨트롤 음향기	1회(1식)	5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조 명	가. 종합조명 • 대공연장	1회	30,000	5. 무선인터컴 1대 추가시 2,000 원 추가 징수 6. 무대 조명기기 사용량이 20kw 이상 일 때 종합조명이라 함 7. 기본시설 전기사용료(무대, 객 석조명료)를 일반조명이라 함 8. 조명기기는 외부에서 반입사용 할 때는 당센터 종합조명 사용 료에 준함
	• 중강당	1회	25,000	
	나. 일반조명 • 대공연장	1회	20,000	
	• 중강당	1회	15,000	
	다. 체육관 조명	1회	10,000	
무 대	가. 무대부대시설	1회	10,000	
영 사	가. 영사기(35mm)	1회	20,000	
	나. 영사기(16mm)	1회	10,000	
	다. 환등기	1회	5,000	
전기료			사용액	
냉·난방료	가. 냉방	1시간당	사용시간과 연 료, 전기료 고 시시가에 의함	
	나. 난방	1시간당		
기 타	가. 행사용 의자 연대	1식	5,000	
	나. 현수막 게첩료	1건	5,000	
	다. 영화촬영 및 비디오 촬영	1건	10,000	
	라. 라디오 중계료(TV)	1회	5,000	

3.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요 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프로그램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1부당 가격	판매금액의 20%	프로그램 및 기타물품 등 을 판매시 시장 승인
기타 물품 판매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	실판매이익의 20%	

4. 상시이용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어린이	청소년	일 반	
수영장	강 습	1인/월	40,000	45,000	55,000	• 주 3회 강습
	자유이용	1인/월	35,000	40,000	45,000	• 어린이 : 초등학교 이하
	1일 이용	1인/일	3,000	3,500	4,000	• 청소년 : 중·고등학교 • 일 반 : 대학생 이상
탁구장	강 습	1인/월		30,000	40,000	• 주 3회 강습
	자유이용	1인/월		20,000	30,000	
	1시간	1대/1시간		3,000	3,000	
스쿼시	강 습	1인/월		51,000	68,000	• 주 3회 강습
에어로빅		1인/월		45,000	45,000	
배드민턴	강 습	1인/월		30,000	30,000	• 주 3회 강습
	자유이용	1인/2시간		1,000	1,000	
헬스		1인/월		35,000	50,000	

5. 기능, 취미교실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기술교육 (1인/월)	주 3시간 이하	15,000	1.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 정 등은 무료 2. 전문직업교육 및 취미교육 중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교육은 재료비 및 교육비 를 조정할 수 있다.
	주 4~5시간	17,000	
	주 6~7시간	19,000	
	주 8~9시간	21,000	
	주 10~11시간	23,000	
	주 12시간 이상	25,000	
취미교육 (1인/월)	주 3시간 이하	10,000	
	주 4~5시간	12,000	
	주 6~7시간	14,000	
	주 8~9시간	16,000	
	주 10~11시간	18,000	
	주 12시간 이상	20,000	
교양강좌		무 료	무 료

6. 보육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교
보육료	1인/월	보건복지부 표준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시간 보육은 안분비율에 의거 징수